

조 정 조 서

사 건 [redacted] 약정금

원 고 [redacted]

조정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조정장 판사 [redacted] 기 일 : [redacted]

조 정 위 원 [redacted] 장 소 : 319호 조정실

공개 여부 : 공 개

원고 조정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 출석

피고 [redacted] 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16,150,000원을 지급하되, 19회로 분할하여 2023. 9월부터 2025. 3월까지 매월 1일에 850,000원씩 지급한다.

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, 미지급된 돈과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
2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3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